

기 관 명	소 재 지
부 천 시 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
부 천 시 원 미 구 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
부 천 시 소 사 구 청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4-5번지
부 천 시 오 정 구 청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2조(사무소 소재지)(생략)		제2조(사무소 소재)(현행과 같음)	
기 관 명	소 재 지	기 관 명	소 재 지
부 천 시 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부 천 시 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
부천시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부천시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
부천시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시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4-5번지
부천시오정구청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단, 구청사 신축 이전시까지)	부천시오정구청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번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5. 3. 17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3. 17

라. 상정일자 : 1995. 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세무부서기구, 인력보강과
-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와 국제담당관 신설이 내부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 구 ————— 5제 신설(순중)

<세무부서>

- 본 청 ————— 1과 1제 폐지(세무조사과, 평가제)

- 구 청 ————— 1과 6제 신설

- ┌ 원미구 1과 2제 신설(징수과, 세무조사과, 징수 2제)
- └ 소사구, 오정구 2제 신설(세무조사과, 징수2제)

※ 원미구 세무과 분과 ... 세무과(부과업무), 징수과(징수업무)

소사구, 오정구 2개계 신설

※ 계 명칭변경

세무1계 → 부과1계, 세무2계 → 부과2계, 평가계 → 징수1계

<국제협력담당관>

- 본 청 ————— 1담당관 2제(국제교류계, 국제통상계)

※ 국제협력계를 국제교류계로 명칭변경

○ 분장사무조정

<세 무 부 서>

- 세무조사과 업무 → 세정과 업무로 통합

<국제협력담당관>

- 총무국 총무과 국제협력계 → 기획실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로 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8
의 결 년 월 일	95. 3. 28 (제36회)

제출년월일 : 1995. 3. 1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세무부서기구·인력보강과
-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와 국제담당관 신설이 내부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 구 ————— 5계 신설(순중)

〈세무부서〉

- 본 청 ————— 1과 1계 폐지(세무조사과, 평가계)
- 구 청 ————— 1과 6계 신설
- [원미구 1과 2계 신설(징수과, 세무조사계, 징수2계)
- 소사구, 오정구 2계 신설(세무조사계, 징수2계)

※ 원미구 세무과 분과 ... 세무과(부과업무), 징수과(징수업무)

소사구, 오정구 2개계 신설

※ 계 명칭변경

세무1계 → 부과1계, 세무2계 → 부과2계, 평가계 → 징수1계

〈국제협력담당관〉 ————— 기획실내 설치

- 본 청 ————— 1담당관 2계(국제교류계, 국제봉사계)

※ 국제협력계를 국제교류계로 명칭변경

○ 분장사무조정

〈세 무 부 서〉

- 세무조사과 업무 → 세정과 업무로 통합

〈국제협력담당관〉

- 총무국 총무과 국제협력계 → 기획실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로 조정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

☐ 기타참고사항 : 별 칙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감사담당관” 다음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제협력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제4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를 한다.

제5조 제1항중 세무조사과와 동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2. 지방세 세원조사
3.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공 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④ (생략) (신 설)	제3조(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공 보담당관, 감사담당관, <u>국제협력담당관</u> 을 둔 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u>국제협력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u> <u>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u>2.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제4조(총무국) ① (생 략) ② (생 략) 1~4(생 략)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4조(총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재무국) ①재무국에 세정과, <u>세무조사과</u> , 회계과를 둔다. ② (생 략) 1.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③ <u>세무조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u> 1. 지방세 세원조사 2.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④ (생 략)	제5조(재무국) ①재무국에 세정과, 회계과를 둔 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 세원조사 3.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4.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③ (현행 제4호와 같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5. 3. 17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3. 17
라. 상정일자 : 1995. 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세무부서 기구·인력보강, 시설물관리차량(고가사다리차, 살수차)의 운전원 증원, 위생환경